

朝鮮時代 ‘地理志’ 類에 나타난 韓藥資源 및 古傳醫學 情報

이정화, 김성수

한국한의학연구원

Traditional Medicine Resources and Traditional Medicine Information Shown on The Chosun Dynasty Geological Document

Lee Jeong Hwa, Kim Seong Su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ng Se-Jong, who had put much effort into maintaining the national structure, published geological documents to reinforce his authority and through these documents could see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medicinal resources. Since then the regional geological documents published in each region included information on the local medical environment of those times. This study is one that focuses on how to specifically understand oriental medicine resources and the contents of ancient medicine by applying the appropriate geological information.

Keyword : king se-jong, traditional medicine, geological document, chosun dynasty, oriental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orean ancient medicine

I. 서 론

질병과 의학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을 마련하였던 것은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는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과의 결합에 따른 질병인식이 변화되는 측면도 있으며, 또한 치료기술의 발전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치료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전근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 치료약물의 발견과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이다. 다만 근대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연적 치료약물에서 더 화학적이고 또한 정제된 약물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근대와 다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연적 치료약물의 사용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검증된 자연적 치료약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과거의 검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과거의 기록들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자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기록들에 거론된 흔적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나간 의학의 역사를 명확히 재구성하는 한편 현실에서의 응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약자원에 대한 고전적들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이글에서는 조선시대 편찬된 자리지류의 서적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그 대상으로 우선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관찬 자리지가 있으며, 또한 관찬 자리지의 토대가 되었던 지방의 읍지가 있다. 이들을 통해서 조선시대 이래로 우수한 약재의 발굴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의학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그 내용들을

■ 접수 ▶ 2007년 12월 4일 수정 ▶ 2007년 12월 13일 체택 ▶ 2007년 12월 22일

■ 교신저자 ▶ 김성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2-795-2013 Fax 02-795-2015 E-mail sskim@kiom.re.kr

어떠한 것들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조선의 한의약 자원 조사의 추이

1) 조선 초기 한의약정책

고려 중기 이후 의학계에 나타난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향약의서의 계속된 편찬이다. 『鄉藥古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救急方』, 『三和子鄉藥方』에서 시작하여 조선초기에는 『鄉藥簡易方』, 『鄉藥濟生集成方』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거칠의 『鄉藥集成方』으로 완성되었다. 이처럼 향약관련 의서의 계속된 편찬은 당시 국가의 의학과 의료정책의 핵심이 향약이라는 담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향약의학 내지 향약의술의 보급은 국가에 의한 전국적인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던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이 시기 굳이 향약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국가와 사회적으로 급격히 팽창되었음이 전제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약재 수요가 팽창하였던 것은 국가의 의료정책과 의료기구의 운영 확대, 의학에 대한 일반 인식 등 다양한 변화가 집결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고려말 사회변화를 주도했던 이른바 신흥(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정치사상 속에 爲民意識으로 仁政論을 확고히 하고 있었으며, 그 실현 방안의 하나로 의학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¹⁾ 가령 『향약간이방』을 편찬하였던 權仲和와 함께 관직 생활을 하였던 홍중선의 지방의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약원의 건설은 당시 신흥사대부들이 의료에 갖고 있었던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

이처럼 의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이 필요하였지만, 특히 중요하였던 것은 약재의 확보였다. 물론 고려중기 이후 몽고와의 항쟁, 고려말 중국의 元과 明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교섭이 빈번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향약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중앙귀족 중심의 의료제도 운

1)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 태학사, 2002.

2) 김성수, 「16세기 鄉村醫療 실태와 士族의 대응」, 『韓國史研究』, 2001;113.

영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약재 외에 국내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향약론의 등장과 함께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시기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혜민서, 제생원 등 대민의료기구의 상설화였으며, 이는 의료대상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동시에 향약론 등장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향약론에서도 여러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과 처방의 근간이 되는 중국의 의서에 나타난 처방 속의 약재와 향약의 약성이 과연 동일한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 향약과 중국 본초가 서로 같은가 다른가를 명백히 구분하고, 같지 않은 약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육종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세종대의 다음 내용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大護軍 金乙玄 · 司宰副正 盧仲禮 · 前教授官 朴堧 등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 本國에서 생산되는 藥材 62種 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는 丹蔘 · 漏蘆 · 柴胡 · 防己 · 木通 · 紫莞 · 蔚靈仙 · 白斂 · 厚朴 · 茯苓 · 通草 · 藗本 · 獨活 · 京三陵 등 14종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이에 중국 약과 비교하여, 새로 진짜 종자를 얻은 것이 6종이 되었다. 명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않은 鄉藥인 단삼 · 방기 · 후박 · 자완 · 궁궁 · 통초 · 독활 · 경삼릉은 지금부터 쓰지 못하게 하였다.³⁾

節日使押物 盧重禮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예부에 글을 올리기를, ‘우리나라가 바닷가 모퉁이에 있어 본시 좋은 의원은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藥草가 나오는데 그 真假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본국에서 나는 약재 중에서 (중국의 약재와) 이름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발기를 벌여 적어서 갖추 올리니, 자세히 살피시어 밝은 의원으로 하여금 진가를 가려 증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하였더니, 예부에서 위에 아뢰어 보낸 太醫院 醫士 周永中과 高文中 등이 館에 이르러 辨驗한 결과 합격된 약재 열 가지는 赤石脂 · 厚朴 · 獨活 · 百部 · 香薷 · 前胡 · 麝香 · 百花蛇 · 烏蛇 · 海馬이고, 알 수 없는 약재 열 가지는 王不留行 · 丹蔘 · 紫莞 · 枳殼 · 練子 · 覆盆子 · 食茱萸 · 景天 · 草薢 · 安息香 입니다.” 하였다.⁴⁾

3) 『世宗實錄』 권19. 世宗 5년 3월癸卯, “大護軍金乙玄 司宰副正盧仲禮 前教授官朴堧等入朝 質疑本國所產藥材六十二種內 與中國所產不同丹蔘 漏蘆 柴胡 防己 木通 紫莞 蔚靈仙 白斂 厚朴 茯苓 通草 藗本 獨活 京三陵等十四種 以唐藥比較 新得眞者六種 命與中國所產不同鄉藥丹蔘 防己 厚朴 紫莞 茯苓 通草 獨活 京三陵 今後勿用”

4) 상계서 권48. 世宗 12년 4월庚寅, “節日使押物 盧重禮回還啓臣等狀于禮部云 小邦僻在海隅 本乏良醫 幸出幾般草藥 未知真假 今將齋到本國所產相似藥名 開坐具呈 伏乞照許 許令明醫辨驗真假 禮部奏差太醫院醫士周永中 · 高文中 等到館辨驗 得堪中藥材一十味 赤石脂 厚朴 獨活 百部 香薷 前胡 麝香 百花蛇 烏蛇 海馬 不識藥材一十味 王不留行 丹蔘 紫莞 枳殼 練子 覆盆子 食茱萸 景天 草薢 安息香”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후박, 독활, 단삼, 자완 등의 약재가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세종 5년 중국에 파견된 노중례에 의해 중국의 약재와 비교 검토가 끝나서 사용이 전면 폐기되었지만, 세종 12년에 다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을 보아 분명 그 사이의 시기에 이들 약재에 대한 조사와 시험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과 조선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비교 검토하는 것 이외에 약재의 확보를 위하여 관직을 설치하고, 또한 약재를 공물로써 국가재정의 한 부분으로 확보하는 방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審藥은 與醫監과 患民署 소속의 醫官으로 각 道에 파견되어 藥材 採取에 종사하였으며⁵⁾, 採藥人으로서 藥夫가 있었다. 成宗 9년 각도의 採藥人으로 大官은 5戶, 小官은 3戶씩 배정하여 雜役을 면제하고 약재만을 채취하여 世業토록 하여 鄉藥의 채취와 보급에 노력하였는데,⁶⁾ 이때 정한 採藥人이 『經國大典』에는 藥夫로 정하여졌다.⁷⁾ 『鄉藥採取月令』의 편찬과 약재확보를 위한 채약인의 잡역 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꾸준히 내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련의 약재확보를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이었다. 지방마다 산출되는 약재를 조사하고, 그 지역에 공물의 형태로 부과함으로써 약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전기 의학기구의 정비와 의서의 편찬으로 나타나는 의료정책의 확립은 약재 수급을 위한 방안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2) 조선전기 지리지의 편찬과 한약자원 조사

우리나라에서 지리지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三國史記』지리지이며, 이후 『高麗史』지리지를 포함해 역대 왕조마다의 지리지가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전체라는 역사서의 서술 방식에 따르는 전대 왕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으나, 일정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世宗實錄地理志』는 위의 지리지와는 다르게 당시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조선의 건국이후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사회적 구조가 확립되어 가면서 국가행정체

계도 정비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고려에 비해 직할 지방 행정구역이 확대되어 이를바 속현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초적인 행정자료 역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은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이 시작된 것은 세종 7년(1425년)이며 완료된 것은 세종 14년(1432)으로 보인다.

춘추관에서 계하기를, “주·부·군·현에서 보조하여 寺社를 창립한 文籍들이 본래 충주 史庫에 있었던 것을, 자나간 임오년에 佛書를 뽑아낼 때에 모두 관집사로 옮겨 두었는데, 이들 문적 중에는 각 고을의 산과 내와 그 형세가 아울러 기록되어 있사오니, 이제 地理志를 편찬하는 때에 마땅히 아울러 참고하여야 하겠사오니 충주에 명령하여 찾아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⁸⁾

라고 한다. 이후 편찬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세종 14년 ‘領春秋館事 孟思誠·監館事 權軫·同知館事 尹淮·申檮 등이 새로 撰修한 八道地理志를 올렸다’⁹⁾고 하였으며, 『세종실록지리지』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 地志가 대략 三國史에 있고, 다른 데에는 상고할 만한 것이 없더니, 우리 세종대왕이 尹淮·申檮 등에게 명하여 州郡의 연혁을 상고하여 이 글을 짓게 해서, 임자년(1432: 세종 14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뒤 (주군이) 갈라지고 합쳐진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다. 특히 兩界에 새로 설치한 州·鎮을 들어 그 道의 끝에 붙인다.’¹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세종 14년 완성된 팔도지리지가 세종의 사후 『세종실록』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세종실록지리지』로 첨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지리지의 편찬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지방 행정구역의 연혁 획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세종실록지리지』에 포함된 내용들을 검토하면 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실들이 밝혀진다. 이는 지리지가 조선의 중앙정부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초자료였다는 점을 밝혀주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田結의 수와 戶口의 수,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다.¹¹⁾ 이는

8) 『世宗實錄』 권28, 世宗 7년 6월 庚子, “春秋館啓 州府郡縣裨補寺社創立文籍 本在忠州史庫 去壬午年刷出佛書時 幷移置觀集寺 前項文籍內 幷錄州府郡縣山川形勢 今地理志撰集時 宜并參考 令忠州尋覓上送 從之”

9) 상계서 권55, 世宗 14년 正月 巳卯, “領春秋館事孟思誠 監館事權軫 同知館事尹淮 申檮等進新撰八道地理志 上曰 予將覽焉”

10) 『世宗實錄地理志』, “東國地志 略在三國史 他無可稽 我世宗大王命 尹淮 申檮等 考州郡沿革 乃撰是書 歲壬子書成 厥後離合不一 特舉 兩界新設州鎮 繢附于其道之末云”

5) 『經國大典』 권1, 吏典 外官職條.

6) 『成宗實錄』 권98, 成宗 9년 11월 壬申.

7) 『經國大典』 권4, 兵典 雜類.

국가의 행정·재정 및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1>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 항목

| 書名 分類 | 世宗實錄地理志 | 東國輿地勝覽 |
|--------------|--|--|
| 行政 | 官職, 所領, 越境處, 鄉所 部曲, 海島 | 郡名 |
| 經濟·財政 | 貢稅, 賦稅, 戶口, 墾田, 土貢, 藥材, 堤堰, 魚梁, 鹽所, 磁器所, 陶器所, 土 地肥瘠 | 倉庫 |
| 軍事 | 牧場, 鎮(軍官·守城軍), 軍丁, 水營(兵船, 船軍), 木柵, 險阻要害 | 關防 |
| 社會·人物 ·禮俗 | 行祭所, 靈異 | 學校, 宮室, 古迹, 題詠, 院宇, 名宦, 寓居, 孝子, 烈女 |
| 自然環境 | 溫泉, 風穴, 氷穴, 土質, 風氣, 土宜 | 形勝 |

지리지의 편찬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지의 계속적인 수정이 필요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연적 환경 변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 등이 보완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크게는 성종대 『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새로운 지리지의 편찬이나, 『慶尙道續撰地理志』처럼 기존의 『慶尙道地理志』를 속수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은 15세기 후반 이후 재지사족이 점차로 중앙에 진출하여 이른바 사립파를 형성하는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립파들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고 있었다. <표-1>에서 나타나는 새로이 추가되는 학교나 예속에 관한 내용은 재지사족이 지방내에서의 그들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입장이 드러나 있다.¹²⁾

따라서 두 지리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였는데, 이글에서 주목하는 한약 내지 한의학관련 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 이 두 자료를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토의, 토공, 약재 항목으로

11)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I · II」, 『歷史學報』, 1976;69 · 70.

12) 李泰鎮,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歷史的 性格」, 『震檀學報』, 1979;46 · 47,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의 편찬체재와 특징에 대한 일고찰」, 『실학사상연구』, 1999;12 참조.

분류되어 있는데, 약재로 사용되는 것들이 토의나 토공에 속한 경우도 있는데, 가령 <표-2>의 울산군의 사례에서도 토공에 포함되어 있는 蜂蜜은 분명 약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³⁾

<표-2> 울산군 산출 토산항목

| |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
|-----|---|--|
| 蔚山郡 | 土宜 稻, 栗, 麻, 土貢 蜂蜜, 黃蠟, 漆, 紙, 篓蕩, 狐皮, 狸皮, 獐皮, 魚皮, 占察皮, 芝草, 雀舌茶, 乾竹筍, 薡草, 吾海曹藿, 細毛, 海衣, 青角, 全鮑, 乾蛤, 洪魚, 黑白碁子, 藥材 防風, 魚骨, 麥門冬, 天門冬, 鹽梅, 烏梅 | 土產 芑, 水鐵(出連川山), 碼瑙石(出郡東遠浦里), 深中青(出郡城北門外), 竹箭(出竹島), 茶(出于弗山), 占察魚, 黃魚, 鱸魚, 廣魚, 大口魚, 鯁, 紅蛤, 青魚, 洪魚, 鯊魚, 海參, 石花, 銀口魚, 古刀魚, 鮎魚, 海鰾, 烏海藻, 香蓀, 海衣, 蕤, 白茯苓, 牛毛, 錢魚, 蜂蜜, 防風, 天門冬(新增) 倭楮, 絡緹, 文魚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약재의 분포나 생산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은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국가의 지방행정 지배를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충실성과 함께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공, 약재가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모든 종류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오히려 대표성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겹증의 절차를 걸쳤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국가 의료 정책상 보다 우수한 약재를 선별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선의 집정자들은 항상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¹⁴⁾

한편 『동국여지승람』의 단계에 가게 되면,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하여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분류의 항목이 土產으로 단일 항목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의도가 재지사족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입장에서 조세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했을 때 烏魚骨, 麥門冬 등이 새로 나타나고 대신 白茯苓이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가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 새로이 한약재의 재배나 채

13) 『世宗實錄地理志』에 보이는 토의, 토공, 약재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산물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로는 토의, 토공 등의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보이지 않는데, 지리지 편찬 시 만들어졌을 지침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4) 주20) 참조.

취가 이루어지거나, 환경요건의 변화에 따라 한약재 생산의 부침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앞서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하여 그 근거가 취약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편찬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2. 조선후기 지리지의 편찬과 읍지

1) 조선후기 관찬 지리지의 편찬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이후 중종 25년에 중보가 가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지리지가 절실하게 요구된 것은 양란이 끝난 이후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특히 전후 복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숙종대에는 『동국여지승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숙종 5년(1679)에 숙종이 김석주로 하여금 『동국여지승람』을 개정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¹⁵⁾ 숙종 25년(1699) 좌의정 崔錫鼎의 건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¹⁶⁾ 이 작업은 『동국여지승람』과는 다르게 문한기구가 아닌 備邊司에 의해서 주관하게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¹⁷⁾

이는 조선후기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6세기 이래 각 지방별로 편찬이 활발해지고 있었던 읍지가 중앙으로 수집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지방의 읍지들의 내용을 살펴더라도 그것은 국가에 의한 통치를 위한 자료보다는, 지방사족들이 재지에서 그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방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탓에 『동국여지승람』의 개정작업은 쉽사리 마무리되기 어려웠다.

국가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리지의 편찬은 영조대의 『輿地圖書』에 가서 다시 시도되었다. 영조 33년(1757) 홍문관에서 8도 감사에게 영을 내려 각 읍의 읍지를 옮리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어, 이후 영조 41년(1765)에 이르기까지 계속 개수되었다.¹⁸⁾ 『여지도서』의 편찬이 각읍의 읍지를 토

대로 한 것이었으므로, 아무래도 읍지의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면서도 坊里, 堤堰, 道路, 田結, 賦稅(進貢, 翳糴, 田稅, 大同, 均役), 軍兵 등의 항목이 첨가되어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히 한약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物產과 進貢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각 읍에서 작성한 것을 정리한 것 이므로 당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古今有無'를 따라 명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서 조선후기 물산과 한약재의 분포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상이 왕실로 상납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진상에 거론되고 있는 한약재의 경우 우수한 품질의 것이 선별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¹⁹⁾

조선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질의 약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봉납 약재의 수치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징치가 자주 거론되고 있었으며, 또한 약재 봉납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관리에 대한 경제책도 자주 내리고 있었다.

李倪이 내의원 도제조 제조의 뜻으로 계문하여 아뢰기를 “內醫院에서 사용하는 熟地黃은 연례대로 豊州에서 써왔습니다. 그러나 정묘난 이후에 부득이하게 양남으로 移定하여 매년 교대로 사용하였는데, 그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豊주에서 증취하였습니다. 작년에 전주에서 써오고 올해는 경상도 차례인데, 양남의 지황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어용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해도에서 나는 다른 약재들은 이미 예전대로 봉진하고 있으며, 지황을 써는 데에 소비되는 술과 쌀, 맷나무는 대단한 것이 아니니 전과같이 채취하여 들여오는 일로 황해감사에게 미리 하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여 “계문대로 하라” 하였다.²⁰⁾ 조선후기 전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어용 약재 확보는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던 조

18) 『輿地圖書』에 대해서는 崔永禧, 「解說」, 『輿地圖書』, 上, 1973, 楊普景,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별호 3, 1987. 현재 남아있는 『여지도서』는 총 313개의 지방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332개의 주부군현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39개의 고을은 여기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19) 이기봉, 「朝鮮時代 全國地理志의 生產物 項目에 대한 檢討」, 『문화 역사지리』, 2003;15(3), 徐鍾泰, 「『輿地圖書』의 物產 조항 연구」, 『韓國史學報』, 2006;25.

20) 『承政院日記』 66책, 仁祖 16년 8월 8일(무술), “李倪 以內醫都提調 · 提調意啓曰 本院所用熟地黃 年例蒸取於黃州 而丁卯亂後 不得已 移定兩南 有一年輪次取用 然後不數年 還復蒸取於黃州矣 上年則蒸取於全州 今年則慶尙道當次 而兩南地黃品劣 忍不合於御用 黃海所產他藥材 自今年 已爲依前封進 地黃蒸制所費酒米燒木 不至大段 依前監採取來事 本道監司處 預爲下諭 何如 傳曰 依啓”

15) 『肅宗實錄』 권8, 肅宗 5년 3월 癸亥.

16) 『承政院日記』 권385, 肅宗 25년 6월 10일 정미, “(崔錫鼎)又所啓 輿地勝覽一冊 多有事迹之可考 故判書朴信圭 爲慶尙監司時 慶尙一道 則曾已衰聚而續成之 今聞全羅監司俞得一 爲江原監司時 江原一道 亦有增續之事云 若令各道道臣 搜集上送 以爲續成之地 則似宜矣 上曰 依爲之”

17) 『備邊司譜錄』 35책, 肅宗 5년 3월 座目.
裴祐晟,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85, 1996.

치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이는 어용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여지도서』나 각 지역의 읍지에서 진상 항목에 들어있는 약재는 결국 최상의 품질로 인정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邑誌와 의학자료

중앙정부의 지리지 편찬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 관할 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읍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읍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앞서 지리지 편찬에 포함되는 조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남아있는 조선후기 자료를 정리해보면 우선 그 지역의 역사사를 개괄하고 있는 建置沿革이 우선 언급된다. 다음으로 郡名이 나오고, 그 지역에 설치되는 官職과 토성에 해당하는 姓氏, 지역의 명승지인 山川, 風俗이 순서대로 기술된다.

이어 행정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군·현내 각 마을의 경계와 호구수, 조세의 규모가 나온다. 조선 후기 조세의 형태는 크게 田稅와 大同, 均役, 徵役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세의 경우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함께 고려한 結負만을 언급하여도 그 조세의 규모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군사 조항도 중시되어 군역을 부담하는 정병의 수를 다룬 軍額, 그 지역의 성곽 등을 다룬 城池 등이 기술된다. 이어서 학교와 향교, 사당 및 서원 등 교육기관이 다루어지고, 관공서를 다룬 公廡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운영된 기타 행정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도로나 교량, 제언, 역, 그리고 고적 등이 자세하게 기술된다.

이처럼 읍지에는 매우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각 지역 내에서 운영되었던 의료와 의학에 관련된 자료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1832년 경 편찬된 대구부 읍지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대구는 慶尙監營이 있는 곳으로, 監司와 府使 및 判官, 都事, 營將 등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屬縣으로는 壽城縣, 鮑穆縣, 河濱縣, 花園縣, 豊角縣이 있으며, 호구는 신묘년에 13, 194호이며 인구는 56, 962명이라고 기록하였다. 토지의 면적과 호구수에 따라 전세와 대동, 균역, 요역 등이 차례로 정하여졌다.

대구는 감영이 설치되었던 곳이기에 군량과 무기 등을 저장할 창고 등이 매우 많았으며, 이와 아울러 자연재해 등에 따르는 진휼을 위한 賑恤庫 역시 갖추어져 있었다. 아무래도 경상도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감영의 감사가 해마다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진상 약재를 감봉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맡은 것이 審藥으로, 주로 각 道의 監司와 함께 활동하면서 藥材의 進上

을 확인하는 작업²¹⁾과 함께 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의술을 체취하기도 하였다. 이를 심약이 의약관련 일을 볼 수 있도록 대구 감영에는 審藥堂 있었다.²²⁾ 심약이 진상하였을 품목으로 대구에서는 人蔘·白朮·白芍藥·赤芍藥·天南星·山藥은 2월 3일에 内醫院에 납부하였으며, 蒲黃 2량은 6월 15일에 납부하였다. 그리고 인삼·백출·백작약·적작약·枸杞子·續隨子·甘菊·柴胡·瓜蔞仁·木瓜·茅香·천남성 등은 10월 3일에 내의원에 납부한다고 하였다.²³⁾

한편 대구 감영에서 출간하였던 책판의 목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萬病回春』·『東醫寶鑑』·『無冤錄』·『痘科彙篇』 등의 의서가 대구에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의학인물 관련 기록으로는 동의보감의 편찬에 儒醫로 참여하였던 鄭碏의 형인 鄭礪의 저술로 보이는 『北窓集』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할 길은 없다.²⁴⁾ 대구부 읍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읍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주목의 경우 서문 밖에 醫局이 있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²⁵⁾

한편 의학인물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東醫寶鑑』을 편찬한 許浚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 허준의 출생에 관한 명확한 자료들이 없는 가운데, 규장각에 소장된 長城邑誌에는 허준이 그 지역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²⁶⁾ 장성읍지는 1895년(고종 32년) 경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데, 허준에 관한 공식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준의 관직이 판서에 이른 적이 없으며, 또한 허준이 받은 扈聖功臣은 3등인데 기록되어 있는 공신의 칭호는 1등에 해당하는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 장성읍지에 기록된 내용이 그 이전에 편찬되었던 읍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공식문서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읍지에서는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의료운영

21) 『眉巖日記』 1571년 10월 11일.

22) 『邑誌 1』 경상도편 1, 「大邱府」, 아세아문화사, 1982:27.

23) 상계서, 「大邱府」, p.32.

24) 상계서, 「大邱府」, p.62.

25) 상계서, 「星州牧」, p.196.

26) 『長城邑誌』古 4797-1-1-3(서울대학교 규장각), “許浚陽川人 字清源 以內醫官至判書 壬辰大駕西幸 與李恒福 鄭崑壽等 同跋涉扈從 錄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封陽平君 所著東醫寶鑑 爲醫學宗匠”

체계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1895년 편찬된 星州邑誌의 사례부분을 살펴보면 「藥局」의 항목 아래 그 운영 내역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성주에 할당된 약재를 진상을 충당하는 인원이 332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중에 양인이 280명, 노비가 52명으로 이들이 도합 612량의 돈을 봄과 가을 나누어 내었다. 이외에도 공납하기 위한 약재에 87명이 배정되어 137량의 약가를 내어, 이 둘을 합하면 총 749량을 중앙 의료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심약과 감영에 납부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으며, 그것들은 月祿으로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²⁷⁾

진상이나 공납이외에 지방에서는 중앙의 각사약방에도 약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성주의 경우에는 中樞府·耆老所에 1년에 두 번 납부하고 있었다.²⁸⁾ 이는 三醫司인 內醫院·典醫監·惠民署 이외에 중앙 관서에 설치되었던 각사약방의 존재와 운영을 밝혀주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처럼 읍지에서는 단지 그 지역 산출 약재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의학문화·제도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조선후기 한약 지원 실상 파악의 한계

조선 후기 한약의 채취, 생산 등에는 국가의 의료정책과 재정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한약재의 공급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었던 정부가 채택했던, 공물제를 통한 한약재의 확보는 조선후기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다.

가령 효종 2년 홍우원의 상소를 통해서 그 내용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홍우원의 상소에 대한 기록은 세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록에 따르면, 효종 2년 9월에 禮安縣監 洪字遠이 구연 전지에 응하여 상소하였는데, 연관 심대부·유계의 석방, 사치 폐해, 당파 제거 등을 말하였다고 한다.²⁹⁾ 그러나 홍우원의 문집에서는 이외에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방납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상소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홍우원은 당시 계속된 재해로 인하여 효종이 구언교를 내린 것에 대해 봉사를 올렸는데, 그 봉사 가운데서 특히

27) 『邑誌3』 경상도편 3, 「星州牧」, 아세아문화사, 1982:132.

28) 상계서, 「星州牧」, p.142.

29) 『孝宗實錄』 권7, 孝宗 2년 10월 辛亥.

중시하였던 것은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대개 백성이 천수를 누리는 것이 오직 음식에 있으며, 나라가 안전한 것은 백성에게 달렸습니다. 풍년이 든 이후에 음식이 풍족해지고, 음식이 풍족한 이후에 백성이 편안해지며, 백성이 편안한 이후 나라가 태평해집니다. 이런 까닭에 영지나 예천을 왕자는 상사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풍년으로 한해를 즐겁게 여기는 것을 상서로 여깁니다.”³⁰⁾ 하였다. 그가 예안의 지방관으로써 안민의 방책으로 현안의 폐해를 고쳐야 함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陳川虛結」·「月利倍徵」·「京納綿布點退改備」·「內局醫官防納藥材」·「麤木禁斷非時苛擾」하는 폐단들이었다.

농민들의 경영을 우선 크게 위협하는 것은, 양전시 토지의 비척을 충분히 살피지 않음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었다. 예안은 현재 예천과 안동의 중간 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농토가 적으며 그나마 토지의 척박함이 심한 곳이다.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홍우원은 당시 그 지역의 토지가 대다수 5·6등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3·4등전뿐만 아니라 1·2등전으로도 기재한다고 하였다.³¹⁾ 이와 같이 전품이 올라가게 되면 토지에서 내어야 하는 전세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결부에 따른 공물 역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물의 운영에 있어서 중간의 방납에 의한 폐단 역시 속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月利倍徵」이라고 한 것이었다. 홍우원은 “경각사의 서리들이 작폐하는 것이 근래 더욱 심합니다. 외방의 주현에서 상납할 물건이 있으며, 그것을 조종하는 힘은 그들(경각사의 서리: 필자) 손에 있습니다. 받은 뇌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점퇴시키고 다시 갖추어 낼 것을 독촉합니다. 상납을 담당하는 서리로써는 그것을 낼 방법이 없어 경주인에게 대금을 빌려 어렵사리 갖추어 상납하고서 백성들에게서 배로 거두어들여 그 부채를 갚으니, 이를 月利라고 합니다.”³²⁾ 라고 저간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월리

30) 『南坡集』 권4, 「疏應旨封事」(任禮安時 辛卯) “蓋民天惟食 國保於民 年豐而後食足 食足而後民安 民安而後國泰 是故 靈芝·醴泉王者不以爲休祥”

31) 상계서 권4, 「疏應旨封事」(任禮安時 辛卯), “陳川虛結之弊 臣竊見本縣僻在窮嶺 其地少平野 多山谷溪澗 而大江經其中 以故 遇水患則泛溢潰裂 覆沒之害特酷 其田皆沙石硗確 絶無膏腴肥沃之土 苟不用力糞治 則稼不成閏有秋 而其民率多貧殘無力 不能糞治 以故 數年耕墾 地力既盡 則不得已而廢棄之 本縣田土陳川之多 其勢固然也”

32) 상계서 권4, 「疏應旨封事」(任禮安時 辛卯), “曰 月利倍徵之弊 臣竊見京各司點胥之作奸 近來益甚 外方州縣 凡有上納之物 其操縱之權 只在其手 所得人情 稍不滿意 則必見退却 督令改備 領納之吏 計無所出 謂於京主人 貸出利布 艱難備納 而倍徵於民 以償其債”

의 방식은 약재를 공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내의원에 공납 내지 방납하는 약재를 들러싼 부정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홍우원은 여러 차례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는데, 경상감영에 보고한 내용이나 구연봉사의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그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응답으로 한해에 4번이나 점퇴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방납의 폐단은 심지어 어약에 까지 미치니 신은 한심하게 여깁니다. 본현에는 내의원에 진상하여야 하는 9월령 응답이 1부 있습니다. 일찍이 경인년(작년: 필자) 9월 봉진하였다 점퇴당했고, 올해 봉진한 것이 3번인데 견퇴당한 것이 또 3번입니다. 매번 한번 씩 견퇴당하여 올때마다 번번히 약을 담당하는 자에게 화내어 질책하고는 다시 좋은 물품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호소하기를 ‘이것은 응답의 죄가 아닙니다. 매번 퇴짜를 맞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였다.”³³⁾

그것은 바로 내의원과 심약이 서로 연계된 부정의 고리로 인한 것이었다. 내의원에서 심약에게 우황을 내리고, 심약은 그 우황을 각읍에 방납하도록 꾀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응답의 가격이 본래 내의원에서 상정될 때에는 목면 12필에서 방납하면서는 50필로 바뀌는 것이었다.³⁴⁾ 물론 이 사이에서 생겨난 이익은 심약과 내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응답과 같은 귀한 약재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가령 山藥 白芍 등은 혼한 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심약과 내의원에 의해서 그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다고 할 지경이었다.³⁵⁾

이는 조정에서도 문제가 되어 다시 경상감사에게 엄중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당시 내의원제조를 맡았던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는 형식상의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즉 응답은 다른 약재와 다르게 크기의 대소나 품질의 좋고 나

謂之月利”

33) 상계서 권4, 「疏應旨封事」(任禮安時 辛卯), “防納之弊 至及於御藥 臣竊寒心 本縣有內醫院進上九月令所封熊膽一部 曾以庚寅九月 封進見退至于今日封進者凡三 而退來者又三 每一退來 臣輒怒掌藥而責之 復令改求好品 其人哀訴曰 此非熊膽之罪也 其所以每每退來者有由焉”

34) 상계서 권4, 「疏應旨封事」(任禮安時 辛卯), “蓋自近年以來 如各邑所封牛黃 熊膽之類 皆歸於內局醫官防納之中 每當封進之時 內局醫官等各將牛黃 熊膽等物下送于審藥 則審藥受之 以此防納於各邑熊膽之價 詳定十二疋 而防納則受納木五十疋”

35) 상계서 권10, 狀報, 陳御藥防納弊(上監司狀 任禮安時 辛卯), “山藥 白芍 不是稀貴之材 而審藥亦稱以內醫所送 防納於各邑 莫不十倍徵價 或貸納白芍 而責以人參計錢還償 此又可駭之甚者 抑未知此等事皆出於內醫之所爲耶 或是審藥之假託耶 是未可知也”

쁨을 구분하기가 쉬우며, 또한 내의원에 약재를 수납할 때에는 제조와 어의, 내의 등이 모두 참여하여 일일이 그 품질을 살펴서 올리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작폐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작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년에 그 일을 담당했던 관리들을 그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폐단을 금단하자고 하였다. 즉 예안의 약부, 감영의 심약, 내의원의 의관들의 대면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을 말하였다.³⁶⁾ 그러나 이후 홍우원의 상소에 거론된 내용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제조들과 연관되어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작폐는 중앙관서와 방납이 서로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었다. 지방의 내부에서도 빈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조세 운영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권력에 의한 비리로써 자행되는 것이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한참 후대이지만, 다산 정약용의 언급은 참고할만하다.

『橘史』에서 말했다. “남쪽 해변의 예닐곱 고을에는 모두 굴과 유자가 생산되는데(서쪽의 海南에서부터 동쪽의 順天까지) 거기에 딸린 여러 섬에서는 그 생산이 더욱 풍성하더니 수십년래에 날마다 쇠퇴하고 달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오직 귀족 집이나 혹 한 그루 있고 섬중에 다만 縣官이 직접 관리하는 네댓 그루가 있을 뿐이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년 仲秋가 되면 邸卒이 吏帖을 가지고 와서 그 과일의 갓수를 세고 나무둥치에 표시를 해두고 갔다가 과일이 누렇게 익으면 비로소 와서 따는데 혹 바람 때문에 몇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곧 추궁해서 보충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값을 징수한다. 광주리째 가지고 가면서 돈 한푼 주지 않는다. 저줄을 대접하느라 닭을 삶고 돼지를 잡게 되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웃이 떠들썩하게 모두 이 집을 나무라고 들어간 비용을 이 집에서 받아낸다 한다. 이에 몰래 그 나무에 구멍을 뚫고 胡椒를 집어넣어 그 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으면 그 대장에서 빠지게 된다.(호초를 집어넣으면 나무가 절로 죽는다) 그루터기에서 움이 돋아나면 잘라버리고 씨가 떨어져 쌓이 나는 족족 뽑아버리니 이것이 굴과 유자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요사이 들으니 濟州 또한 이와 같은 폐단이 있다는데

36) 『承政院日記』 121책, 孝宗 2년 10월 13일(정사), “凡藥材捧上時 提調開坐 御醫內醫等 無遣進參 一看品 自下達上 皆以為可合 然後提調 又詳細看品而捧之 少有未盡 則莫敢或捧 乃是流來舊規 耳目之多既如此 則一二掌務官 雖欲行私 其勢誠難 而宇遠疏中所言 不啻丁寧 必有所據 如此事 實臣等之所欲聞者 不可不摘發重治 以為懲治之地 而但自上年以至今日 為掌務者 至於六人 御醫內醫 又非特數十人 則不知其所防納者 為何人 不可不十分明查 必得實狀 而罪之”

만약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몇십년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굴과 유자가 없어질 것이다. 나라의 祭需를 갖추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저 법을 만든 당초에 좋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늘이 낳은 바요 땅이 기르는 바이며 봄바람과 비·이슬을 받고 자연히 무성해지는 것인데 사람을 보내서 지키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며 관원을 보내어 살피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다. 단지 그 심는 일만 신척하고 다시는 간섭하지 말며 과일이 익으면 값을 후하게 쳐주고 그 빼앗아가는 것을 금하면 이에 번식할 것이다. 금제하는 법조항이 세밀해질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더 옥 심해지니 또 누가 심고 키우기를 즐겨 하겠는가.

茶山 서쪽 1백여 步 떨어진 곳에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그 집에 굴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해마다 돈 5, 6백 銀을 벌어 환곡을 깊였다. 이 얘기가 조금 새나가자 邸卒이 달려들어 갖가지로 공갈하고 안뜰에까지 돌입하니 그 선비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손에 도끼를 잡고 나무를 베어 던져주어 버렸다. 온 가족이 모두 울었다. 내가 『斬橘詞』를 지어서 위로하였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선후기 한약재 생산에 있어서 갖는 한계점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조선의 농업생산력이 취약한 점이 한약재 생산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약재 자체가 농산품이라는 점도 있지만, 농업생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약재의 채취, 재배보다는 아무래도 곡물의 재배에 우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서 기인한다.

다음으로 조선의 중앙정부에서 약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공물제로써의 운영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재정방식은 '算出計入'의 횡간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생산성이 불안정한 농업 사회에서 이는 매우 불합리한 방식이었다. 결국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부담제(군총제, 도총제)를 취하게 하였고, 공동체 내부에서 암암리에 우수한 자원을 사장시키는

37) 『與猶堂全書』 5집, 政法集 권26, 「牧民心書」 권11, 工典六條, 「山林工典 第一條」, “橘史云 南沿六七邑 皆岸橘柚 西自海南東至順天所屬諸島 其產益豐 數十年來 日衰月耗 今唯貴族之家 或有一株 島中惟縣官所封四五株而已 詢其故曰 每至仲秋 邸卒持吏帖來 數其顆封其幹以去 及其黃熟 始來摘之 或風落數箇 卽追使補之 如不可得徵其本價 傾筐空之 不酬一錢 烹雞擊豚 其費夥然 四鄰嗷嗷 咸咎此家 以其所費 微於此家 於是陰鑽厥木 擠以胡椒 厥木自枯 乃除其籍 擊胡椒 則木自死 萌孽旁出 則之剪之 子落苗生 隨即拔之 此橘柚之所以耗也 近聞濟州 亦有此患 若此不已 不過數十年 吾東無橘柚矣 王祭不共 將若之何 大抵立法之初 原有未善 故其流弊至是也 天之所生 地之所養 春風雨露 自然榮茂 差人看守 非計也 差員生審 非計也 但飭其種 勿復照管 及其熟也 厚酬厥價 禁其攘奪 於是乎繁殖矣 禁條愈密 民苦益甚 又誰肯種之培之乎 茶山西去百餘步 有一貧士 有橘一樹 賦得錢五六百 以納還穀 其說稍漏 邸卒來侵 噴喝萬端 突入內闈 貧士不堪憤憤 手持斧斬以予之 一室皆哭 余作斬橘詞以贈之”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공물납의 근거가 되는 공안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인문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민에 대한 수탈만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약자원의 분포 및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도 일정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자료의 이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한다.

III. 결 론

한국에서의 의학사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전혀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질병의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약재들이 당시에 얼마만큼 생산되고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전근대 사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분명 의료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약재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조선 초기 국가체제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세종은 국가의 지방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리지의 편찬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간행된 『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전국적인 약재자원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 지역에서 편찬된 邑誌나 조선후기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輿地圖書』 등과 같은 지리지들은 각각의 자료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당시의 의료환경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이 각 지역의 특산·우수 약재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의료기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료인들에 대한 언급 등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선에서 기록하고 남겨놓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고전 의학·의료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지리지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단위 약재 기록은 현재의 우수 한약재 발굴과 개발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용성을 갖기에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그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IV. 참고문헌

1.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I · II」, 『歷史學報』, 1976;69 · 70.
2. 李泰鎮,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歷史的 性格」, 『震檀學報』, 1979;46 · 47.
3. 楊普景,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별호 3, 1987.
4. 裴祐晟,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1996;85.
5. 徐仁源, 「『東國輿地勝覽』 의 편찬체재와 특징에 대한 일 고찰」, 『실학사상연구』, 1999;12.
6. 이기봉, 「朝鮮時代 全國地理志의 生產物 項目에 대한 檢討」, 『문화역사자리』, 2003;15(3).
7. 徐鍾泰, 「『輿地圖書』의 物產 조항 연구」, 『韓國史學報』, 2006;25.
8. 김성수, 「朝鮮後期 醫藥政策의 성격」, 『東方學志』, 2007; 139.